

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. 다만,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(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)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"유수검지장치실"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08.12.15>

- 5.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. 다만,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6.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<개정 08.12.15>
- 7.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<개정 11.11.24>

제7조(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)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- 1.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
- 2.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
- 3.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. 다만,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
- 4.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 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, 표지는 "일제개방밸브실"이라고 표시할 것 <개정 08.12.15>

제8조(배관)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·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·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,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(KS D 3576)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. 다만, 본 조에서 정하

지 않은 사항은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.

<개정 16.7.13>

- 1. 배관내 사용압력이 1.2MPa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<개정 16.7.13>
  - 가. 배관용 탄소강관(KS D 3507)
  - 나.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(KS D 5301). 다만,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.
  - 다.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(KS D 3576)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(KS D 3595)
  - 라. 덕타일 주철관(KS D 4311) <신설 16.7.13>
- 2. 배관 내 사용압력이 1.2MPa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<개정 16.7.13>
  - 가. 압력배관용탄소강관(KS D 3562) <신설 16.7.13>
  - 나.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(KS D 3583) <신설 16.7.13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「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17.7.26>

- 1.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
- 2.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
- 3. 천장(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반자를 불연재로 또는 준불연재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<개정 11.11.24>

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
- 1. 전용으로 할 것. 다만,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